

접 수	의안과 - (20 :)
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

수 신 : 의 장

제 목 :

위의 청원을 국회법 제1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.

- 붙 임 1. 청원소개의견서 3부
2. 청 원 서 3부. 끝.

2013년 2월 14일

청 원 인

성 명 : 양 지은 (문화상임위원회 대변인)

주 소 :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하동 광고

전화번호 : (휴대전화 :)

소 개 의 원 : 양 지은 (인)외 18인 (문화상임위원회)

						의 장
담당자	청원담당	과 장	국 장	차 장	총 장	

청원소개의견서

청원인	주소 :
	성명 : 문화상임위원회
건명	문화 바우처(이용권) 제도의 개선안
소개년월일	2013년 2월 14 일
<p>소개의견</p> <p>청원인은 대한민국청소년의회 문화상임위원회입니다. 대한민국청소년의회는 2013년 2월 임시회의를 개최하여 본 의원이 발의한 안건 중 의결된 안건 하나가 『문화바우처 제도 법률 개선안』입니다. 대한민국청소년의회에서 의결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『현재 문화바우처 법률은 가구 구성원의 인원수를 고려하지 않은 한 카드발급과, 명시되지 않은 재충전 기간으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. 그러므로 가구 인원수를 고려한 금액의 지급과, 명확한 재충전 기간을 명시한다.』는 것입니다.</p> <p>청소년 의회의 요구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.</p> <p>문화예술 진흥법 제 15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</p> <p>제15조의4(문화이용권의 지급 및 관리)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수급권자, 그 밖에 소득수준이 낮은 저소득층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문화소외계층에게 문화이용권을 지급할 수 있다.</p> <p>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이용권의 수급자격 및 자격유지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가족관계증명·국세·지방세·토지·건물·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에 관한 자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고, 해당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. 다만, 「전자정부법」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은 예외로 한다.</p> <p>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른 자료의 확인을 위하여 「사회복지사업법」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연계하여 사용할 수 있다.</p> <p>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이용권의 발급, 정보시스템의 구축·운영 등 문화이용권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.</p> <p>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특수한 상황을 제외하고 한가구당 4인을 기준으로 하여 문화이용권을 발급한다.</p> <p>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재충전기간을 변동 없이 명기하여야 한다.</p> <p>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문화이용권의 지급·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</p> <p>신구문대조표</p>	

현행	개정문
<p>제15조의4(문화이용권의 지급 및 관리)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수급권자, 그 밖에 소득수준이 낮은 저소득층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문화소외계층에게 문화이용권을 지급할 수 있다.</p> <p>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이용권의 수급자격 및 자격유지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가족관계증명·국세·지방세·토지·건물·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에 관한 자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고, 해당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. 다만, 「전자정부법」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은 예외로 한다.</p> <p>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른 자료의 확인을 위하여 「사회복지사업법」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연계하여 사용할 수 있다.</p> <p>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이용권의 발급, 정보시스템의 구축·운영 등 문화이용권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.</p> <p><신설></p> <p>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문화이용권의 지급·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</p>	<p>제15조의4(문화이용권의 지급 및 관리)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수급권자, 그 밖에 소득수준이 낮은 저소득층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문화소외계층에게 문화이용권을 지급할 수 있다.</p> <p>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이용권의 수급자격 및 자격유지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가족관계증명·국세·지방세·토지·건물·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에 관한 자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고, 해당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. 다만, 「전자정부법」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은 예외로 한다.</p> <p>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른 자료의 확인을 위하여 「사회복지사업법」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연계하여 사용할 수 있다.</p> <p>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이용권의 발급, 정보시스템의 구축·운영 등 문화이용권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.</p> <p>⑤ <u>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특수한 상황을 제외하고 한가구당 4인을 기준으로 하여 문화이용권을 발급한다.</u></p> <p>⑥ <u>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재충전기간을 변동 없이 명기하여야 한다.</u></p> <p>⑦ <u>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문화이용권의 지급·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</u></p>

위와 같은 내용에 대하여 찬성하면서 대한민국청소년의회 의원이 제안한 청원을 소개합니다.

청원서

1. 제안이유

부산 일보에서 조사한 문화 바우처(이용권) 실태에 관한 기사이다.

부산지역 한 아동양육시설은 아동 수가 800명인데도 문화바우처 혜택은 5만원 밖에 돌아가지 않는다. 올해부터 문화이용권 금액이 가구당 5만원으로 바뀌면서 아동양육시설에도 아동 수와 관계 없이 연간 5만원만 지원하게 되었고, 관련법 상 양육시설의 아동은 모두 해당 시설장의 보호 아래 있기 때문이다.

문화바우처 홈페이지에 명시된 재충전 기간이다.

2011년 - 카드 신설(발급 시작)

2012년 - 4월 2일(재충전)

2013년 - 3월 초 (재충전)

이처럼 2011년 카드 발급 시작 이후로 매년 재충전 기간이 달라 사용자들에게 어려움이 따르고 있다.

2. 주요골자

□ 문화예술 진흥법 제 15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5조의4(문화이용권의 지급 및 관리)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수급권자, 그 밖에 소득수준이 낮은 저소득층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문화소외계층에게 문화이용권을 지급할 수 있다.

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이용권의 수급자격 및 자격유지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가족관계증명·국세·지방세·토지·건물·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에 관한 자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고, 해당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. 다만, 「전자정부법」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은 예외로 한다.

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른 자료의 확인을 위하여 「사회복지사업법」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연계하여 사용할 수 있다.

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이용권의 발급, 정보시스템의 구축·운영 등 문화이용권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.

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특수한 상황을 제외하고 한가구당 4인을 기준으로 하여 문화이용권을 발급한다.

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재충전기간을 변동 없이 명기하여야 한다.

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문화이용권의 지급·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신구문대조표

현행	개정문
<p>제15조의4(문화이용권의 지급 및 관리)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수급권자, 그 밖에 소득수준이 낮은 저소득층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문화소외계층에게 문화이용권을 지급할 수 있다.</p> <p>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이용권의 수급자격 및 자격유지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가족관계증명·국세·지방세·토지·건물·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에 관한 자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고, 해당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. 다만, 「전자정부법」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은 예외로 한다.</p> <p>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른 자료의 확인을 위하여 「사회복지사업법」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연계하여 사용할 수 있다.</p> <p>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이용권의 발급, 정보시스템의 구축·운영 등 문화이용권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.</p> <p><신설></p> <p>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문화이용권의 지급·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</p>	<p>제15조의4(문화이용권의 지급 및 관리)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수급권자, 그 밖에 소득수준이 낮은 저소득층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문화소외계층에게 문화이용권을 지급할 수 있다.</p> <p>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이용권의 수급자격 및 자격유지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가족관계증명·국세·지방세·토지·건물·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에 관한 자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고, 해당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. 다만, 「전자정부법」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은 예외로 한다.</p> <p>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른 자료의 확인을 위하여 「사회복지사업법」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연계하여 사용할 수 있다.</p> <p>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이용권의 발급, 정보시스템의 구축·운영 등 문화이용권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.</p> <p>⑤ <u>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특수한 상황을 제외하고 한가구당 4인을 기준으로 하여 문화이용권을 발급한다.</u></p> <p>⑥ <u>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재충전기간을 변동 없이 명기하여야 한다.</u></p> <p>⑦ <u>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문화이용권의 지급·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</u></p>